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38
------	------

2025.04.24.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0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04월 0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5.04.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가. 제안이유

- 규제개혁 전담 조직의 기구 정원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규제혁신기획관(3급)」, 「규제개선담당관(4급)」 신설에 따라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조정

- (본청) 3급 +1명, 4급 +1명, 5급 이하 △2명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총정원의 변동없이 직급 간 정원 조정을 통해 신설 예정인 규제혁신기획관(3급)과 그 소속인 규제개선담당관(4급)의 정원을 각각 1명씩 확보하고자 제출됨.

2. 공무원 정원 조정의 적정성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의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조치로, 기획조정실에 규제혁신기획관(3급)과 그 소속으로 규제개선담당관(4급)을 신설하기 위해 3급 및 4급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5급 이하 정원을 2명 감원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정원 조정 계획 >

◦ 총 정원 : 19,171명 ⇨ 19,171명 (변동 없음)

(단위 : 명)

구 분	총 정원	정무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현 행	19,171	4	10,700	7	26	25	3	269	2	10,207	161	37	410	25	7,434	7	554
개편 후	19,171	4	10,700	7	26	26	3	270	2	10,205	161	37	410	25	7,434	7	554
증 감	-	-	-	-	-	+1	-	+1	-	△2	-	-	-	-	-	-	-

◦ 기관별 정원 (변동 없음)

(단위 : 명)

구 분	계	집행기관	소 방 공무원	교 육 공무원	의 회 사무처	합의제	합의제 경 찰	직속기관 경 찰
현 행	19,171	10,521	7,434	554	429	226	3	4
개정 후	19,171	10,521	7,434	554	429	226	3	4
증 감	-	-	-	-	-	-	-	-

※ 현행 : '25. 1. 1. 시행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기준

※ 합의제 경찰 :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직속기관 경찰 : 서울소방방재센터 소속

- 이를 위해 서울시는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결원 조정, ▶유사기능 통합에 따른 감축, ▶사업 종료·축소 등 기능 쇠퇴 분야의 정원 감축을 통해 확보된 본청 및 사업소의 정원 17명¹⁾을 활용하여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종전 5급 이하 정원 2명과 3급 및 4급 정원 각 1명씩을 상계한 것임.
- 이와 같은 상하위직 간의 정원 상계는 지난 2022년 민선 8기 출범시 향후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목표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총 정원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 채, 기구 신설이나 개편 시에 관리자급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기구정원 규정”)²⁾ 제29조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동 규정 제30조는 지방 공무원 정원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법리적 문제는 없음.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1) 본청·사업소 정원(5급 3명, 6급 10명, 7급 4명)을 조정하여, 본청 정원(3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8명, 7급 4명)을 증원한 것으로 사실상 6급 2명을 감원하고 3급 및 4급 1명씩을 증원한 것임.

2)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행정기구를 설치, 개·폐할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함.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 다만 이러한 상하위직급 간 상계를 활용한 인력 운영은 관리자급 정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 현장 실무 및 운영 인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가분수 형태의 인력 구조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이번 규제혁신기획관 및 규제개선담당관의 신설에 따른 2025년도 서울시 인건비의 증가는 3천 7백만원 수준이며 향후 5년간 3억 5천 5백 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25년도 서울시 기준인건비³⁾ 규모(2조 895억원)와 최근 3~4년간 서울시 인건비의 집행률이 평균 97%대 수준인 점을 고려 하면 인건비 예산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3) 지방기구정원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인건비의 한도액으로, 일반직, 소방직, 일반·시간선택·한시임기제, 실무수습공무원, 청경,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을 합산한 인건비성 경비의 한도액이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 등의 패널티가 부여됨.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38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규제개혁 전담 조직의 기구 정원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혁신기획관(3급)」, 「규제개선담당관(4급)」 신설에 따라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조정

- (본청) 3급 +1명, 4급 +1명, 5급이하 △2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별표2(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첨부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5. 3. 13. ~ 3. 25.) 결과: 의견제출 없음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심연수(☎ 2133-6729)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3급란, 4급란, 5급 이하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26	16		1	9	
4급	270	165	19	8	71	7
5급 이하 소계	10,205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비용발생 요인 : 규제개혁 전담 조직의 기구 정원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간 정원을 조정
-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지출						
	○ 인력운영경비	38,674	79,102	80,909	82,769	84,685	366,139
	소계(a)	38,674	79,102	80,909	82,769	84,685	366,139
수입	○						
	소계(b)						
□ 총 비용(a-b)		38,674	79,102	80,909	82,769	84,685	366,139

※ 인력운영비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 3.0%(‘25년 기준) 적용 추계

※ 1차년도는 시행월 2025년 7월(6개월)을 기준으로 추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지방세수입	38,674	79,102	80,909	82,769	84,685	366,139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38,674	79,102	80,909	82,769	84,685	366,139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조직담당관 02-2133-672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총정원 변동없음

○ 일반직 : (-)

- 3급 +1, 4급 +1, 6급 △2

2. 비용소요 추계(1차년도 12개월 기준) : +77,34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합 계	+77,349	◆ 총 계 : +77,349 [인력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 : 58,449 ▷ 3급(+1) : $118,172 \times 1\text{명} = 118,172$ ▷ 4급(+1) : $102,583 \times 1\text{명} = 102,583$ ▷ 6급(△2) : $81,153 \times \Delta 2\text{명} = -162,306$ ※ 인력운영비 : 기본급, 수당 등 포함 [기구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 : 18,900 ▷ 3급(+1) : $14,700 \times 1\text{명} = 14,700$ ▷ 4급(+1) : $4,200 \times 1\text{명} = 4,200$ ※ 기구운영비 : 업무추진비, 직책급 포함